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1명, 6급 6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받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수사 인력 35명(경정 16명, 경감 10명, 경위 9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4조제5항 전단 중 “72명”을 “6명(6급 6명)은 고용노동부, 72명”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방청장”을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894”를 “1,895”로, 일반직 계 “664”를 “665”로, 4급 또는 총경 이하 “637”을 “63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60”을 “134,301”로, 경찰공무원 계 “129,818”을 “129,853”으로, 총경 이하 “129,717”을 “129,752”로, 일반직 계 “4,348”을 “4,354”로,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7”을 “4,33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u> ,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u> ----- -----. ----- -----.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 략) ⑤ 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중 <u>72명</u> (소방경 72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u>소방청장</u> 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 (생 략)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6명(6급 6명)</u> 은 <u>고용노동부, 72명</u> ----- -----. ----- ----- <u>해당 기관의 장</u>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894</u>		<u>1,895</u>	+1	
일	반	직		•	•		
		계		•	•		
			<u>664</u>		<u>665</u>	+1	
		•		•	•		
		•		•	•		
4	급	또는		•	•		
		총	<u>637</u>		<u>638</u>	+1	
		경		•	•		
		이		•	•		
		하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260</u>	<u>134,301</u>	+41
경찰공무원 계	<u>129,818</u>	<u>129,853</u>	+35
•	•	•	
•	•	•	
총경 이하	<u>129,717</u>	<u>129,752</u>	+35
•	•	•	
•	•	•	
일반직 계	<u>4,348</u>	<u>4,354</u>	+6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27</u>	<u>4,333</u>	+6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2